



논산을 새롭게
시민을 행복하게

의안번호	제126호
------	-------

<p>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

제 출 자	논 산 시 장
제출연월일	2025. 8. 29.

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26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8. 29.
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제안설명자 : 건강증진과장

1. 제안이유

- 도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의 통일화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돌봄 환경 제공으로 형평성과 행정 효율성 확보로 출산 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산후조리원 이용대상 변경(안 제6조제2항)
- 나. 이용료 및 이용 감면률 변경(안 제8조)
- 다. 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의 개정(안 별표 1)
- 라. 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별 증빙서류의 개정(안 별표 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다. 기타사항
 - 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 [기획감사실-9011(2025.08.07.)]
 - 2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복지정책과-25563(2025.08.11.)]
 - 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아님 [예산실-8648(2025.08.07.)]

4)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

가) 예고기간: 2025. 7. 30 ~ 2025. 8. 19. (20일 이상)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고

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충청남도 인구정책과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7호 중 “둘째아”를 “셋째 자녀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”를 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3호(중전의 제2호) 및 제4호(중전의 제3호) 중 “이용 신청일 기준”을 각각 “첫째 자녀를 출산한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(중전의 제4호) 중 “시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”을 “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하고,”로, “감면”을 “감면 (다만, 신청 인원이 이용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관내에서 분만한 산모도 해당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경우 별표 2의”를 “사람은 별표 2에 따른”으로 한다.

2.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: 100분의 40 감면
별표 1 및 별표 2는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	건강증진과장	강 현 숙
안	모자보건팀장	김 수 정
자	담 당 자	김 담 비 (746-8062)

[별표 1]

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(제8조 관련)

기 간	1주(7일)	2주(14일)	3주(21일)	4주(28일)	비 고
금액	91만원	182만원	-	-	2주 초과 시, 1주당 91만원 추가

※ 예약금 : 총 이용료의 10% 납부

※ 비 고

1. 이용료는 산모 또는 산모와 영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, 1일 기준 기본요금은 13만원으로 한다. 다만, 총 이용료의 1,000원 미만은 절사한다.
2. 쌍생아 등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, 신생아 1명당 기준 이용료의 3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납부한다.
3. 이용료 감면은 2주(14일)을 기준으로 하며, 이를 초과하는 이용 일수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납부한다.
4. 이용료 외에 산후조리에 필요한 소모품비 및 프로그램 이용 따른 재료비·교재비 등은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다.

[별표 2]

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별 증빙서류(제8조제1항 관련)

감면 대상	감면비율	증빙서류
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	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	· 수급자증명서 · 차상위계층 증명서
·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		· 장애인등록증 · 가족관계증명서
·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	· 유공자(유족)등록증 · 가족관계증명서
·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산모		· 주민등록등본 · 가족관계증명서
·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산모		· 한부모가족증명서
·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		· 주민등록등본 ·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·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		· 주민등록등본 · 가족관계증명서
· 「5·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	· 5.18민주유공자확인서 · 가족관계증명서
·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		· 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사진단서
· 그 밖에 보호출산제 등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		· 관련 서류
·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	이용료의 100분의 40 감면	· 주민등록등본 · 가족관계증명서
· 첫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	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	· 주민등록등본 · 가족관계증명서
· 첫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시에 1년 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	이용료의 100분의 10 감면	· 주민등록등본 · 가족관계증명서
·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하고,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충청남도예 주민등록을 둔 경우 (다만, 신청 인원이 이용 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와 관계 없이 관내에서 분만한 산모도 해당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)		· 주민등록등본 · 출생증명서

※ 비고

1. 감면 대상별 증빙 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해당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.
2. 감면 대상에 둘 이상 해당 될 경우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.
3. 2주 이하 이용 일수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한다.

□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이용 대상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 중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우선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다태아 또는 <u>둘째아</u> 이상을 출산한 산모</p> <p>8. ~ 10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6조(이용 대상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<u>셋째 자녀</u> ----- -----</p> <p>8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 등)</p> <p>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. 다만, <u>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</u> 출산지원 시책으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2. <u>이용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</u></p>	<p>제8조(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 등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--- <u>시장</u> <u>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 <u>해당하는 경우에는</u>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: 100분의 40 감면</u></p> <p>3. <u>첫째 자녀를 출산한</u> -----</p>

산모의 배우자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: 100분의 30 감면

3. 이용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시에 1년 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: 100분의 10 감면

4. 시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: 100분의 10 감면

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 2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
[별표 1]

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(제8조 관련)

기간	1주(7일)	2주(14일)	3주(21일)	4주(28일)	비 고
금액	91만원	182만원	-	-	1주당 91만원의 추가

※ 예약금 : 총 이용금액의 10%

※ 비 고

- 이용료는 산모나 산모와 영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기본요금은 1일 기준 13만원으로 한다. 다만, 총 이용 금액의 1,000원 미만은 절사한다.
- 쌍생아 등 출산 시, 추가되는 영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산정하지 않는다.
- 이용료 감면 일수는 14일을 기준으로 하며, 그 이후에는 사용일수에 따른 기본요금을 납부한다.
- 위 이용료 외 산후조리에 필요한 소모품 및 프로그램 이용 등에 따른 재료비, 교제비 등의 비용은 수의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.

--

4. 첫째 자녀를 출산한 -----
--

5.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하고, --- 감면 (다만, 신청 인원이 이용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관내에서 분만한 산모도 해당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)

② -----
-----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-----.

[별표 1]

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(제8조 관련)

기간	1주(7일)	2주(14일)	3주(21일)	4주(28일)	비 고
금액	91만원	182만원	-	-	2주 초과 시, 1주당 91만원 추가

※ 예약금 : 총 이용료의 10% 납부

※ 비 고

- 이용료는 산모 또는 산모와 영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, 1일 기준 기본요금은 13만원으로 한다. 다만, 총 이용료의 1,000원 미만은 절사한다.
- 쌍생아 등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, 쌍생아 1명당 기준 이용료의 3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납부한다.
- 이용료 감면은 2주(14일)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이용 일수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납부한다.
- 이용료 외에 산후조리에 필요한 소모품비 및 프로그램 이용 따른 재료비교제비 등은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다.

[별표 2]

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별 증빙서류(제8조제4항 관련)

감면 대상	감면비율	증빙서류
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	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	· 수급자증명서 · 차상위계층 증명서
·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		· 장애인등록증 · 가족관계증명서
·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	· 유공자(유족)등록증 · 가족관계증명서
·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산모		· 주민등록등본 · 가족관계증명서
·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산모		· 한부모가족증명서
·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		· 주민등록등본 ·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· 다태아 또는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		· 주민등록등본 · 가족관계증명서
· 「5·16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6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	· 5.16민주유공자확인서 · 가족관계증명서
·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		· 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상진단서
· 그 밖에 보호출산제 등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		· 관련 서류
〈신.질〉		
· 이용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논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	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	· 주민등록등본 · 가족관계증명서
· 이용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논산시에 1년 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	이용료의 100분의 10 감면	· 주민등록등본 · 출생증명서
· 논산시 관내 분탄산부인과에서 분탄한 産內 산모		

※ 비고

- 1 감면 대상별 증빙 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해당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.
- 2 감면 대상에 둘 이상 해당 될 경우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.
- 3 2주 이하 이용 일수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한다.

[별표 2]

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별 증빙서류(제8조제4항 관련)

감면 대상	감면비율	증빙서류
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	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	· 수급자증명서 · 차상위계층 증명서
·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		· 장애인등록증 · 가족관계증명서
·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	· 유공자(유족)등록증 · 가족관계증명서
·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산모		· 주민등록등본 · 가족관계증명서
·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산모		· 한부모가족증명서
·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		· 주민등록등본 ·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·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		· 주민등록등본 · 가족관계증명서
· 「5·16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6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	· 5.16민주유공자확인서 · 가족관계증명서
·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		· 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상진단서
· 그 밖에 보호출산제 등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		· 관련 서류
·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	이용료의 100분의 40 감면	· 주민등록등본 · 가족관계증명서
· 첫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	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	· 주민등록등본 · 가족관계증명서
· 첫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시에 1년 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	이용료의 100분의 10 감면	· 주민등록등본 · 출생증명서
· 관내 분탄산부인과에서 분탄하고,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(다만 신청 인원이 이용 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서와 관계 없이 관내에서 분탄한 산모도 해당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)		

※ 비고

- 1 감면 대상별 증빙 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해당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.
- 2 감면 대상에 둘 이상 해당 될 경우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.
- 3 2주 이하 이용 일수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한다.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가. 재정 수반 요인 :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
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위탁운영비용 지급
- 나. 비용추계의 전제 : 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
관한 조례 제10조(위탁운영)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공통사항 : 추계기간은 2025년 ~ 2029년까지로 함
- 2025년 개관을 전제로 연간 운영비를 추계하였음
 - 인건비 : 간호인력 등 21명(896백만원)
 - 운영비 : 운영 소모품 구입 및 관리 등(664백만원)
 - 보험료, 복리후생비 : 89백만원
 - 소모품비, 재료비 : 239백만원
 - 전기, 수도요금 및 수수료, 관리비: 336백만원

나. 추계결과

(단위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합계
비 용	1,560	1,606	1,654	1,703	1,754	8,277

※ 연도별 인건비 평균 인상을 3% 적용

다. 추계 총괄표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항 목	산정액	비 고
손실보전액(A-B)		△992	
수입	총 이용료(A)	568	
	이용료	56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5실 운영기준 · 예상 이용자수: 약313명 · 운영 수입금: 568백만원 - 1주 × 910,000원 × 47명 = 42,770,000원 - 2주 × 1,820,000원 × 227명 = 413,140,000원 - 3주 × 2,730,000원 × 33명 = 90,090,000원 - 4주 × 3,640,000원 × 6명 = 21,840,000원 <p>※유사사례 이용현황을 참고하여 이용수요를 기준으로 이용 기간에 따른 이용료 산정</p>
지출	총 운영비(B)	1,560	
	인건비	896	총 21명[책임자 1명(간호사), 직원 20명(간호사 4, 간호조무사 8, 조리원 2, 세탁원 4, 행정 및 시설관리 2)]
	운영비	664	보험료, 복리후생비, 전기·수도료, 소모품비, 통신비, 물품구입비,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 등

3. 작성자

건강증진과장 강현숙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「모자보건법」

제15조의 17조(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 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(이하 이 조에서 “공공산후조리원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공공산후조리원 설치·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, 모자동실 설치·운영,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 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 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모자보건법 시행령」

제17조의 6조(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) ① 법 제15조의 1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설치·운영하는 산후조리원(이하 “공공산후조리원”이라 한다)의 설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.

- 모자보건법 시행령 [별표 2의 2]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기준 등(제17조의6 관련)

1. 설치기준 (생략)

2. 운영 기준

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가. 감염 및 안전관리(생략)

나. 모자동실 운영 등(생략)

다.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 이용

1)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비용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이용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2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이용하게 하거나,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가) 「5·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
나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
다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
라)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

마)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 또는 그 배우자

바)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

사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

아)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

자)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

라. 행정적·재정적 지원

조례·규칙의 제정, 관할 보건소·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마. 실태조사 및 평가

공공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